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407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06.03 forluv77@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05

랜떡 정보공개서

(주)랜떡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랜떡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전화 : 02-3433-1857

팩스 : 02-3433-185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3433-185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랜떡	랜떡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7.20	2022.09.20	김진환	02-3433-1857	02-3433-1854
	법인등록번호	110111-8371356	사업자등록번호	287-87-0280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진환	랜떡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환	02-3433-1857	02-3433-185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최준영	랜떡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환	02-3433-1857	02-3433-185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멕시카나 외 2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광은, 이주세	02-3433-1857	02-3433-1854
	법인등록번호		174711-0011001	사업자등록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랜떡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랜떡	
상 호	랜떡 OO점	해당 지역명 사용
상표(서비스표) (I.9. 참조)		출원 4020220225239 등록 4020073990000 * 현재 사용중인 상표입니다.

	랜떡	출원 4120150045524 등록 4103655190000 * 현재 사용중인 상표입니다.
	영주랜떡	출원 4120150045523 등록 410365518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2022	497,119	17,492	479,626	43,160	-20,319	-20,257
2023	419,878	43,332	376,545	389,463	-104,606	-103,080

○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진환	대표이사	2022.07.20.~현재	(주)랜떡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최준영	사내이사	2022.07.20.~현재	(주)랜떡 사내이사	R&D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가맹사업 경영	2022.01.26.~현재	떡볶이 집(ZIP)(등록번호: 20212758)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프랜차이즈 경영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가맹사업 경영	1989.11 ~ 현재	멕시카나(등록번호: 20080100262)라는 영업표지의 외식프랜차이즈 경영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가맹사업 경영	2022.04.01.~ 현재	치킨더홈(등록번호: 20080100499)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프랜차이즈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2.12.07. 출원 2023.04.07. 등록	출원 4020220225239 등록 4020073990000	주식회사 랜떡	2033.04.14
랜떡		2015.09.22 출원 2016.07.12. 등록	출원 4120150045524 등록 4103655190000	주식회사 랜떡	2026.07.12
영주랜떡		2015.09.22 출원 2016.07.12. 등록	출원 4120150045523 등록 4103655180000	주식회사 랜떡	2026.07.12

○ 위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당사가 지정한 디자인, 사인물 등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랜떡 가맹사업 현황

1. 랜떡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년 10월 12일)

2. 랜떡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랜떡	랜떡	김진환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3. 랜떡 업종

영업표지	업종	
랜떡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떡볶이, 튀김, 어묵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랜떡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3		3
서울				1		1	2		2
부산									
대구							1		1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랜덥 가맹점 수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2023						

6. 랜덥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랜덥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멕시카나	20080100262	외식업	868/0	873/0	867/0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치킨더홈	20080100499	외식업	195/0	129/0	73/0
계열회사	(주)멕시카나	떡볶이 집(ZIP)	20212758	외식업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랜덱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당사는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랜덱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9,483	19,483	-	
광고선전비	기타	연중	19,483	19,483	-	
판매촉진비	기타	연중	-	-	-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방이동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02-414-4041

-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해당 예치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식회사 랜덱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랜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3,3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OPEN전: 소멸성 및 지원, 제공된 대가 이외 반환 OPEN후: 소멸함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전: 전액 반환 교육후: 소멸성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500
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6,300	-			33㎡(10평) 기준
인테리어	「V. 1. 가」	16,500	1,650	계약 또는 물품 입고 시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의	3,300				
주방설비	거래상대방	16,50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의탁자, 어닝, 오토바이, 전면통유리공사, 전기증설 비용, 에어컨, 소모품, CRM, CID, 닥트, POS, 키오스크 등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설계 및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절한 품질로 완성되었느냐 등을 검수하며 인테리어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귀하는 당사와 계약하여 가맹점을 운영 시 배달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은 귀하가 담당하시게 되며 본사는 슈퍼바이저를 통해 그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맹점주가 별도 정함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랜덱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의 규모 및 예상매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POS 관리비	협력업체	월 22	-	미반환	사용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설비	통보 즉시	교육 시작 전 계약취소	교육 시작 후	
판촉비	가맹본부	점주와 SV협의로 개별진행		행사시작 고지 이전	행사시작 고지 이후	산정기준 : 사은품의 종류, 가맹점의 행사 참여도
광고비	가맹본부	월 165	매월 10일	광고매체 집행계약서 작성 이전	광고매체 집행계약서 작성 이후	산정기준: 가맹사업자간의 비용부담 배분액은 "연간사업계획서"에 의해 결정 전국 가맹점당 매월 20만원 가맹사업 본부(본사) 50%부담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0	매월 10일			부가세 포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다른 간판변경비용은 가맹점의 규모, 간판의 재질, 변경사유,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 감독 시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하여 점 운영을 하는 데는 적정재고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적정재고를 유지해야 고객의 주문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재고 관리 산출기준은 평균 매출의 3일 분량입니다. 당사는 계약 후 이것이 지켜지는지를 수퍼바이저 활동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랜덱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

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하자가 없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상태, 반품량, 유통기한, 반품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반품의 범위와 그 가격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랜덱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당사 랜덱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받을 물품 및 상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수/발주 홈페이지, 개별공지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 및 간판은 지역별로 거래 상대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상황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표 업체를 기재했고,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부재료는 지역별 지사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 지사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랜덱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참조	수/발주 홈페이지 게시	수/발주 홈페이지 게시	ERP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에서 권장하는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랜떡	떡볶이 집(ZIP)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입구 기준 도보 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랜덤포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랜덤포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랜덱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10조 제4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판매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제	

조 또는 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3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경고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품질관리 기준 등” 사항 등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 등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기초과정교육 등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성년후견의 개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랜덥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등) 가맹점사업자가 지키기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2회 이상 지적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3조 [계약의 일반적 해지] 제1항 각 호 또는 제24조 [계약의 즉시해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 해지사유 또는 즉시 해지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격표·메뉴판·원산지표시·영양성분 분석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3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의무(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 상품 등의 대금, 시설비, 광고비 등)를 위반할 경우	
○ 로열티 관련 감사결과 실제금액과 차이가 실제금액 기준으로 1% 이상일 경우	
○ 가맹계약서 제12조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3조 [시정조치 등] 제2항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 “품질관리 기준 등”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필수적인 물품의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받은 상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없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사용고객, 가맹본부와의 제휴업체 등과의 할인 고객 등에 대하여 대고객서비스에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하거나, 상품권 수령거부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소비자클레임으로 인한 랜덥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19조 [판촉행사]에서 정한 판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광고물 제작 시 가맹본부의 B나 영업표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착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 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인근 랜덥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모든 운영사항에 대하여 가맹점간에 서로 합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배달박스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 맹본부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연속하여 주 3일 이상 또는 1개 월에 6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 점포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 또는 정책을 거부·철회하자고 선동하거나 협박 함으로써 본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의 업무에 중 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 또는 그营业을 방해하거나,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저해하거 나, 또는 가맹점 상호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온라 인 상 허위사실 유포, 비방, 욕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명칭 등 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를 사용고지 안내(광고, 전화 등 포 함)하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탈법 행위, 기타 비행이 언론에 보도 정보 통신망상에 공개되어 브랜드가치 침해 내지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 시하지 않을 경우	
○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가맹본부가 사전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상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2-3433-1857)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 보증금,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으로 가맹본부와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 동일한 장소에서(또는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으로 가맹본부와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분식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02-3433-182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랜덱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24:00 (매장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단, 일일 영업시간 12시간 준수)	일주일에 6일, 매월 26일 이상 영업	문의: 02-3433-182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의 업무를 당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사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랜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연간 광고 예산 수립 -> 가맹점 부담금 제시 --> 1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행사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행사계획 공고, 가맹점부담액 제시→1주일 내 납입	행사 사항에 따라 부담비율 결정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회원제서비스 및 제휴서비스(카드, 배달어플 등), 할인제도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부담비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하게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랜덥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메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7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일방적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 또는 본 계약 제23조(계약의 일반해지) 제1항, 제24조(계약의 즉시해지)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를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위약금으로 일금오백만원(₩5,000,000)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본 계약 제26조에 따른 철거·원상회복 비용 포함)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본 계약 제2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 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계약 체결	D-27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6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7(17일)	
개점 준비	- 개점 판촉 준비	D-7~6(2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1(6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2-3433-1857)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랜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기본 이론	1. 회사 연혁 2. 체인점 개설절차 3. 인허가 신고 사항 일체		실습 /강의	점포오픈 전	전 교육 과정 점주 참석 必
	제조 실습	4. 위생교육 등 5. 검열 관련 6. 조리 이론 교육 7. 작업자 위생관리				
	직무 이론	8. 원·부재료 관리 9. 설비관리 10. 법무&노무, 세무 상식 11. 메뉴 소개 12. 친절 서비스				현장 교육 조정 가능
개점 후 교육	보수 교육	운영 지도	청결화 작업, 조리실습, 서비스교육	실습/강의	당사가 정한 기일 (별도공지)	보수교육 대상 선정매장 필수 (연 2회)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랜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신규 교육	9박 10일 (합숙)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휴게시간 미포함 시간 표기)
개점 후 보수 교육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점포 오픈 후 이수

○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비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가맹점당 금액이 책정되며, 한 가맹점당 기준 인원은 두 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교육 인원이 추가 되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보수교육 대상 가맹점은 당사의 가맹점 점검 시 품질 및 청결관리 등의 서비스(QCS)기준, 조리 매뉴얼 기준 준수 점검이 필요 시 점검을 통해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가맹점으로 하며, 보수교육 대상 매

장으로 선정된 가맹점은 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본사에서 정하는 날에 참석해야하며 비용은 가맹점주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송파직영점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27-1 1층 1호
2	대구	대구직영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9-27 1층
3	서울	도곡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상가동 지하1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7,891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6개월 이상 영업한 직영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6개월 미만 영업한 직영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433-185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원·부재료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물품명, 규격, 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공급하는 물품(원·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는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제품 외에도 당사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당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고물이나 판촉물은 당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판매하는 메뉴 및 판매가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주식회사 랜떡(랜떡)		
	성명(대표자) 김진환		
	주소(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4길 35 (송파동, 멕시카나빌딩)	전화번호 02-3433-1857	
예치 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 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랜떡	김진환	(인)	영업표지	랜떡
------	---------	-----	-----	------	----

■ 아래 빈칸에 “반드시”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작성해주세요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 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체크V)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가맹점명 기재)	소재지(주소 기재)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 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주식회사 랜떡	김진환	(인)	영업표지	랜떡
------	---------	-----	-----	------	----

■ 아래 빈칸에 “반드시”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작성해주세요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 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체크V)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가맹점명 기재)	소재지(주소 기재)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